

철도 · 궤도공사업

■ 업무내용

철도·궤도를 설치하는 공사

Ex: 궤도공사, 레일공사, 레일용접공사, 분기부공사, 침목공사, 도상공사, 궤도임시받침공사, 선로차단공사,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, 건널목보판공사 등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1.5억원 이상	3억원 이상

2. 기술능력

- 가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
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· 철도토목기사
(2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
나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
다) 용접기능사 ·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

기술사	용접, 농어업토목, 토목구조, 토질 및 기초, 도로 및 공항, 지질 및 지반, 토목시공, 철도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시공
기능장	용접, 건축일반시공
기사	용접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 토목, 철도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
산업기사	판금제관, 용접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 토목, 철도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일반시공
기능사	판금제관, 피복아크용접, 특수용접, 가스팅스텐아크용접,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, 철도토목, 측량
기능사보	특수용접, 가스용접, 전기용접, 철골구조물, 보선

*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C등급 이상	C등급
철도 · 궤도공사업	950,392원	법인 - 1.5억원 개인 - 3억원	법인 - 43좌 (40,866,856 원) 개인 - 85좌 (80,783,320 원)	법인 - 53좌 (50,370,776 원) 개인 - 106좌 (100,741,552 원)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				

4. 시설 · 장비

사무실	장비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	모터카1대(견인력25t), 트롤리4대(적재하중10t), 타이템퍼2대, 레일연결특수용접설비(플래시버트용접·가스압접), 양로기1대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	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